


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
(지점 설립·폐업 신고 포함)

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

【 목 차 】

I. 인증서 재발급 관련 사항

1. 근거 규정	3
2. 조치 및 행정사항	3
3. 인증서 재발급 사항	4
1) 상호명 변경	4
2) 소재지 변경	4
3) 대표자 변경	5
4) 조직형태 변경	5
5)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	7
4. 온라인 신청 방법	8

II. 정관 등 변경 신고(지점 신고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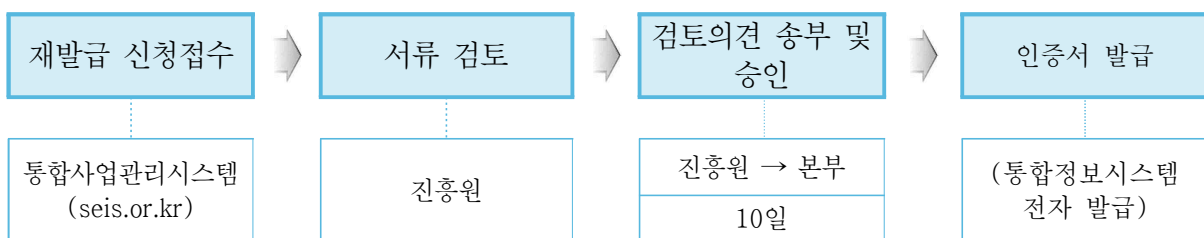
1. 근거 규정	9
2.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	9
3.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	9
4. 정관 변경 신고 제출 서류	10
5. 사회적기업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설립 및 폐업	11
6. 온라인 신청 방법	11
※ 관련 서식 모음	12

1. 근거 규정

-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(인증서의 재발급)
 - (일반변경 사항) 상호명·대표자·소재지·조직형태
 - (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)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·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
 - *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할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

2. 조치 및 행정사항

-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관명, 대표자, 소재지, 조직형태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(seis.or.kr)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
- 사회적기업이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,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



- (처리기간)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요청 이후, 제출서류가 적격할 경우 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되며, 재발급 된 인증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자 발급
-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,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

3. 인증서 재발급 사항

1) 상호명 변경

【 상호명 변경 관련 제출 서류 】

- ① (신)사업자등록증 (소재지: 도로명 주소)
- ②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(인)허가증 (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)
 - 비영리법인: 주무관청의 설립(인)허가증
 - 비영리민간단체: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
 - 그 외: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- ③ 상호명 변경 관련 회의록 (사본)
 - 정관 상 '기관 명칭 변경' 관련 심의·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(이사회·운영위원회·총회 등) 만 인정
- ④ (신)정관 사본 (변경 시)
 - 변경사항 있는 경우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'정관변경'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 (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)

2) 소재지 변경

【 소재지 변경 관련 제출 서류 】

- ① (신)사업자등록증 (소재지: 도로명 주소)
- ②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(인)허가증 (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)
 - 비영리법인: 주무관청의 설립(인)허가증
 - 비영리민간단체: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
 - 그 외: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- ③ 소재지 변경 관련 회의록 (사본)
 - 정관 상 '소재지 변경' 관련 심의·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(이사회·운영위원회·총회 등) 만 인정
- ④ (신)정관 사본 (변경 시)
 - 변경사항 있는 경우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'정관변경'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 (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)
- ⑤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 문서 (사본)
 - 법인 소유 건물인 경우, 건축물대장 혹은 토지대장 대체 제출 필요

3) 대표자 변경

【 대표자 변경 관련 제출 서류 】

- ① (신)사업자등록증 (소재지: 도로명 주소)
- ②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(인)허가증 (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)
 - 비영리법인: 주무관청의 설립(인)허가증
 - 비영리민간단체: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
 - 그 외: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- ③ 대표자 변경 관련 회의록 (사본)
 - 정관 상 '대표자 변경' 관련 심의·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(이사회·운영위원회·총회 등)만 인정
- ④ 주식변동상황명세서 (주식 변동 시)

4) 조직형태 변경

- (공통사항) 사회적기업이 조직형태 변경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, 변경 사실과 유급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제반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
 - 검토 결과 조직형태 변경 시 주된 사업 및 근로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, 기존 사회적기업과 연관성 없는 전혀 다른 조직형태라 판단될 경우에 별도 인증 받아야 하며, 기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인증 취소·반납업무지침에 따라 조치
 -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,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
- (사업단) 사업단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별도의 조직형태를 만들어 모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 하는 것을 이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,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
- (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)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형태 변경을 하여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, 변경 사실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

- (기업 분할시) 별도 인증 필요(기업분할은 해당 법인의 사회적·경제적 가치가 인증취지와 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된 기업 각각 인증 필요)
- (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해당 사업분야를 독립법인 형태로 독립하는 경우)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인증은 불필요

【 조직형태 변경 관련 제출 서류 】

- ① (신설법인)사업자등록증 (소재지: 도로명 주소)
- ② (소멸법인)폐업사실증명원
 -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, 폐업 불필요
- ③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(인)허가증 (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)
 - 비영리법인: 주무관청의 설립(인)허가증
 - 비영리민간단체: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
 - 그 외: (신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- ④ (조직형태 변경 전) 조직형태 변경 관련 회의록 (사본)
 - 정관 상 '조직형태 변경' 관련 심의·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(이사회·운영위원회·총회 등)
- ⑤ (조직형태 변경 후) 이사회 명부, (상법상회사인 경우) 주주명부
 - 근로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의사결정구조 구성 여부 확인
- ⑥ (조직형태 변경 후) 주주명부 (상법상회사)
- ⑦ 4대보험 가입 내역
 - 유급근로자 고용유지 여부 확인
 - 기존 사회적기업, 신규 법인 각각 제출
- ⑧ (조직형태 변경 후) 급여대장, 급여이체 내역
 - 신규 법인 유급근로자 확인
- ⑨ (신)정관 (공증, 사본)
 - 변경사항 있는 경우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'정관변경'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 (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)
- ⑩ 법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(공증, 사본)
 - 사업단의 경우, '사업단의 모법인'과 '신규 법인' 간 계약
- ⑪ (사업단이 분리 독립하는 경우)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신규법인 회의록(이사회 등)
 - 사업단에서 독립법인 형태로 전환한다는 내용 확인
- ⑫ (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)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

5)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

-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사유 및 전환 유형에 맞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흥원이 검토 한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
 -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인증요건 '제3장 2 인증요건 중 사회적목적 실현을 충족하여야 함
 - 변경 전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,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을 선택. 유급근로자 고용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은 불가함
 - 적격 서류 제출 시 현장실사 등을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및 기타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등 확인
 - * 점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받은 경우, 개선(시정) 완료 후 신청 가능
-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

【 사회적 목적 유형 변경 관련 제출 서류 】

- ①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변경신청서 (하단 서식 참고)
- ②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 관련 회의록 (이사회 등)
- ③ 변경된 정관 (변경 시)
 - 변경사항 있는 경우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'정관변경'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 (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)
- ④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(하단 서식 참고, 변경 유형에 맞는 서식 작성 필요)
- ⑤ 유급근로자 명부 (하단 서식 참고)
-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⑦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증빙 서류
 -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른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증빙 서류
- ⑧ 재무제표 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
 - 신청 월 직전 6개월 이상의 실적에 대해 회계(세무)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서류

4. 온라인 신청 방법

【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방법 】

- ①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접속 및 로그인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
- ② 원편 인증·지정관리 메뉴 클릭, 인증관리 메뉴 클릭
- ③ 인증서 재발급 메뉴 클릭
- ④ 오른편 '추가' 버튼 클릭
- ⑤ 하단 인증서 재발급 신청내용 기재 및 제출 서류 첨부

※ 재발급 신청 사유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며, 다중 건일 경우 다중 체크 필요

- ⑥ '저장'버튼 클릭

【 인증서 발급 방법 】

- ①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접속 및 로그인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
- ② 원편 인증·지정관리 메뉴 클릭, 인증관리 메뉴 클릭
- ③ 인증신청서 발급 및 조회 메뉴 클릭
- ④ 인증서 발급 버튼 클릭

※ 단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

Ⅱ 정관 등 변경신고 및 지부 등 신고

1. 근거 규정

-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(정관 등)

2.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

- 목적, 사업내용
-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* 정관에 명기된 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아님
 - * 해당 변경 건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(seis.or.kr) '인증서 재발급' 메뉴 통해 별도 신청 필요
-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-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-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
-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
-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- 사회적기업 지부(支部), 재원조달, 회계

3.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

- 사회적기업은 <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>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 (정관 등)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할 진흥원에 신고
 -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. ‘정관 변경 신고’ 제출서류

1) [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·비영리민간단체·협동조합·사업단] 제출서류

【 제출 서류 안내 】

- 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(하단 서식 참고)
- ② 이사회 등 회의록 (사본)
 - 정관 상 ‘정관 변경’ 관련 심의·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(이사회·운영위원회·총회 등) 만 인정
- ③ (신) 정관 (사본)
 - 정관(혹은 해당 변경 내용을 담은 총회 등 회의록) 공증 필요
- ④ 신·구조문대조표 (하단 서식 참고)
 - 정관개정사항 표기

* 변경일의 기산점: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

2) [민법상 사단/재단법인·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·사회복지법인·공익법인 등] 제출서류

【 제출 서류 안내 】

- 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(하단 서식 참고)
- ② 이사회 등 회의록 (사본)
 - 정관 상 ‘정관 변경’ 관련 심의·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(이사회·운영위원회·총회 등) 만 인정
- ③ (신) 정관 (사본)
 - 정관(혹은 해당 변경 내용을 담은 총회 등 회의록) 공증 필요
- ④ 신·구조문대조표 (하단 서식 참고)
 - 정관개정사항 표기
- ⑤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(인가)서 (사본)
 - ※ “주무관청”이란, 법인 설립 당시 허가(인가)를 받은 행정관청을 의미(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며, 관할 고용센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)

* 변경일의 기산점: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(인가)받은 날 (허가(인가) 통지문을 수령한 날)

5. 사회적기업 지부 설립 · 폐업 등의 신고

-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지점에 미포함
- 사회적기업 지점에 대하여 별도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교부하지 않음
- 지점은 본점과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, 사업 보고 시 지점 실적 포함하여야 함

【 지점 설립 · 폐업 관련 제출 서류 】

- 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(하단 서식 참고)
 - 정관 변경 사항이 없어도 해당 신고서 양식을 사용(사유란에 '지점 신고' 기입)
- ②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설립 및 폐업 관련 회의록 (이사회 등)
- ③ 사회적기업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
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<지점에 관한 사항>에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등기여부 확인
- ④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사업자등록증 (폐업의 경우 폐업증명원)
- ⑤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6. 온라인 신청 방법

【 정관 변경 신고 방법 】

- ①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접속 및 로그인,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
 - ② 왼편 인증·지정관리 메뉴 클릭, 인증관리 메뉴 클릭
 - ③ 정관 변경, 지점 설립·폐업 신고 메뉴 클릭
 - ④ 오른쪽 '정관변경신고' 버튼 클릭
 - ⑤ 하단 내용 기재 및 제출 서류 첨부
- ※ 정관변경 사유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
- ⑥ '저장', '변경신고' 버튼 클릭

<서식1>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변경신청서

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변경신청서			
사회적기업 명칭		인증번호	제 - 호
인증유형(현재)	[]사회서비스제공형 []일자리제공형 []지역사회공헌형 []혼합형 []창의·혁신형		
대표자 성명		전화번호	
주 소			
<변경 신청내용> * 변경유형 []사회서비스제공형 []일자리제공형 []지역사회공헌형 []혼합형 []창의·혁신형 * 변경사유(구체적 사유 기재)			
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신청기관 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			
첨부서류	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의 사유 및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		

<서식2>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7.17.>

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관명							
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취약계층 수혜자(B)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		
	명		명		%		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)	총사업비		총노무비(A)	총수입(B)	총수입(B)/ 총노무비(A)		
	원		원	원	%		
취약계층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주민등록번호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		
	※ 적을	칸이 부족한	경우 별지 작성 가능		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기관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<서식3>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5.7.17.>

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관명					
근로자	전체근로자(A)		취약계층 근로자(B)		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
	명		명		%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매출액)	총사업비		총노무비(A)	총수입(B)	총수입(B)/ 총노무비(A)
	원		원	원	%
취약계층 근로자	일련번호	이름	주민등록번호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
	※ 적을	칸이 부족한	경우 별지 작성 가능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
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신청기관 대표자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<서식4>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7.17.>

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									
신청기관명									
사업지역		()시/도 ()시/군/구							
사회적기업의 필요성									
일자리 제공		전체 근로자(A)			지역취약계층 근로자(B)			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	
		명			명			%	
사회서비스제공	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	지역취약계층 수혜자(B)			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	
		명			명			%	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		총 사업비		총 노무비(A)		총 수입(B)		총 수입(B)/총 노무비(A)	
		원		원		원		%	
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		구분	일련 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	해당 취약계층 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	
		근로자							
		수혜자							
지역사회 공헌 현황		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							
		지역주민의 소득·일자리 증대							
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	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	
					%			%	
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	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	
					%			%	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									
첨부서류		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				수수료 없음	

※ 비고

- 1. “사회적기업의 필요성”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2. “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”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3. “지역사회 공헌 현황”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
<서식5>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5.7.17.>

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					
신청기관명					
일자리 제공	전체 근로자(A)		취약계층 근로자(B)		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
	명		명		%
사회서비스 제공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취약계층 수혜자(B)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
	명		명		%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매출액)	총사업비		총노무비(A)	총수입(B)	총수입(B)/총노무비(A)
	원		원	원	%
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주민등록번호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
	※ 적을	칸이 부족한	경우 별지 작성	가능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)

<서식6> 기타(창의·혁신)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5.7.17.>

기타(창의·혁신)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관명				
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				
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				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매출액)	총사업비	총노무비(A)	총수입(B)	총수입(B)/총노무비(A)
	원	원	원	%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

첨부서류	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<서식7> 유급근로자 명부

유 급 근 로 자 명 부 (20 년 월 ~ 20 년 월)

기관명 :

연번	근로자명	생년월일	취약 계층 유형	입사일	퇴사일	근로 시간 (주단위)	월임금액	고용형태	비고
1	○○○	1975.1.1	장애인		· ·	40	206만원	기간제	일반
2	□□□	1982.12.12	일반인		· ·	40		무기 계약직	일반
3	△△△	1987.5.1.	저소득자		· ·	40			일자리 창출사업
4	◇◇◇◇	1960.6.30.	고령자		· ·	30	160만원		기타지원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9									
10									

<서식8>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

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		처리기간
		10일
기 관 명		
소 재 지	(전화번호 :)	
대표자 성명	(생년월일 :)	
정관 변경사유 (해당사항에 표시)	☐ 목적 사업 사항 ☐ 명칭·소재지 사항 ☐ 기관·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의사결정방식 ☐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☐ 사회적기업 재원 조달 사항 ☐ 사회적기업의 회계사항 ☐ 기타(변경사항 다수)	
	☐ 사회적기업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설립 및 폐업 사항	
	세부내용	
변 경 일 자	인증번호 제 - 호 (사회적기업 인증번호)	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.		
년 월 일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		
		수수료
		없 음
※ 구비서류 1. 정관개정 사항(신·구조문대비표) 1부. 2. (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·비영리민간단체·협동조합·사업단 등) 총회 등 회의록 1부. 3. (민법상 사단 및 재단·법인·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·사회복지법인·공인법인)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(인가)서 1부. 4. 신 정관(사본) 1부. 5. 사회적기업 인증서(사본) 1부. * 정관변경일: 정관 변경 의결일 혹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(인가)일		

<서식9> 정관변경 신고 제출서류

신 · 구 조문 대비표 (예시)

(2010.00.00. 개정)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~ 제33조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~ 제33조 (현행과 같음) <u>제34조(이사회)</u> <u>③ 이사장은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	